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개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여성 인권 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 부설로써 장애여성의 결정권이 존중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05년 1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여성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독립생활 프로그램 개발, 권익 옹호 활동, 장애여성 동료 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숨]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장애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변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신청자격 >>>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1,2}급 장애인
(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2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2011년 10월부터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모집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급여 >>> 시간당 6,500원

전화 02) 441-2313 이메일 wdesum@empal.com 홈페이지 www.wde.or.kr
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425-5 대우베네시티 상가 411호
후원계좌 하나은행 142-9100065-01104 (예금주 :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아시나요?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운동계의 오랜 요구와 투쟁 끝에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제도화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안에서 갇혀 지내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은 식사,
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며 외출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육을 받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된지 4년이 넘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럼,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대로 이해하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한번 점검해볼까요?



활동보조서비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자원봉사와 다릅니다. 자원봉사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자원봉사자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다르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활동보조인이 '봉사를 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 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용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활동보조인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제공된다?



지자체 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만 6세 ~ 65세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이고, 그 중에서도 별도의 판정 과정을 거쳐서 선별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제한과 나이제한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하루에 2 ~ 4시간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상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혼자 사는 장애인을 위한 독거 특례와 각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겨우 화장실만 가고, 밥만 먹었는데...”



“시간 다 됐네요. 가볼게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서비스 과잉이용 방지와 이용자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높은 비율로 상향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활동보조시간에 따라 최대 8만원으로 올라갔으며, 올해 1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으로 바뀔 경우 본인부담금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자체를 포기해야한다면 '독립적인 삶' 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